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

심 사 보 고

| | |
|------------|------|
| 의 안 번 호 | 1293 |
|------------|------|

2015년 9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6월 28일, 이창섭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창섭 의원)

가. 제안 이유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나. 주요골자

- 현재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도심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통행권 논란과 같은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원안 동의

라. 이 송 처

- 국 회 : 국회의장
-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 요

- 동 건의안은 관련 법상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자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2015년 기준으로 전기자전거의 세계 판매량이 약 4천만대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전기자전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만7천대 이상 판매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참고 : 최근 5년간 국내·세계시장 전기자전거 판매 실적¹⁾

(단위 :대)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국내시장 | 5000 | 8000 | 11,000 | 13,000 | 17,000 |
| 세계시장 | 32,890,000 | 31,100,000 | 34,110,000 | 37,050,000 | 40,070,000 |

- 전기자전거의 보급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정의함에²⁾ 따라 원동기장치를 부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고,

1) 최영진·이부혁, 규제에 묶인 전기자전거 자전거 타는 데 웬 오토바이 면허?, 중앙일보, 2016.4.2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로를³⁾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규정함에 따라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이 실제 전기자전거 이용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도시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속도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보행자나 자전거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⁵⁾

※ 참고 : 국가별 전기자전거 운영 비교⁶⁾

| 국가 | | 운영 측면 | | | | |
|------|-------|--------------|----------|----|----|----------|
| | | 면허 | 자전거도로 통행 | 등록 | 나이 | 헬멧 |
| 유럽연합 | 연합법 | 소속 국가 규정에 따름 | | | | |
| | 영국 | × | - | × | 14 | - |
| 아시아 | 일본 | × | ○ | - | - | × |
| | 중국 | ×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미국 | 연방법 | 각 주 규정에 따름 | | | | |
| | 워싱턴 | × | ○ | - | 16 | 자전거 규정준용 |
| | 캘리포니아 | × | - | × | 16 | ○ |
| | 일리노이 | × | ○ | - | 16 | × |
| 캐나다 | 연방법 | 각 주 규정에 따름 | | | | |
| | 온타리오 | - | 지자체 규정 | - | 16 | ○ |
| | 앨버타 | × | - | × | 12 | ○ |

3)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

4)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5) 지우석,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경기개발연구원, 2016.5.18.)

6) 신희철·김동준·정성엽, 전기자전거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KOTI-Brief, 2012.4.13

- 따라서, 동 건의안은 기술발달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실제 이용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서 관련 산업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기자전거가 원동기 장치에 의해 작동할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자전거와의 사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 규정마련 등 안전운행 관련 규정도 같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임⁷⁾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운행에 대한 개선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⁸⁾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동 건의안에 대해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회장 한만정)에서 전기자전거의 안전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16.8.16.)

8) 자전거정책과-2424(2016.9.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급속화 된 도시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비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검토되고 있으나 도시 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도심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통행권 논란과 같은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해외 도시들의 경우 속도제한을 전제로 전기자전거를 보행자 또는 자전거도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 사용을 허가하는 등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 없던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